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323호

2016년 10월 21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2016-1491호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3
○ 공	고 제2016-149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관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
○ 공	고 제2016-1495호	남동구 강제건인 장기미반환 차량 구매공고(5차)	7
○ 공	고 제2016-1502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9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2016-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2016-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 례안 입법예고	39

고 시

○ 고	시 제2016-120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47
○ 고	시 제2016-121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실시계획 고시	51
○ 고	시 제2016-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5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491호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등록 공고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대장의 주소가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6. 10. 17. ~ 2016. 10. 31.
-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63)
- 의견제출시 첨부서류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토지의 표시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 상 소유자	등록될 주소
1	고잔동	364-2	도로	5	백순필	160(고잔동 160)
2	고잔동	364-8	도로	1	백순필	160(고잔동 160)
3	고잔동	364-9	도로	116	백순필	160(고잔동 16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49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6.10.17.. ~ 2016.11. 1.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6.11. 1..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문서】 참조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소유자및이해관계인내역

연 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주민번호	대상자주소	저당등록내역	저당권설정 자	주소	방치장소
1	인천32마 8846	비스토	승용 경형	(주)엘 에스컴	12. 1.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 ***블록 *롯데 남동우리타운 이동 ***호(고잔동)	을부번호:2801-200 2-038277 설정일자:20021202	LG카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석산로208번길27 -25 (구월동7-98)
2	인천32머 8844	렉스턴	승용 대형	이*열	66. 8.1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번길 **	을부번호:2817-200 7-001788 설정일자:20070326	한미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	논현동746-4 에코타워 지하2층
3	65가8105	트라제XG	승용 중형	김주만	74. 2.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번길 ***, *동***호(용원동, *원빌라)	을부번호:4813-200 2-001556 설정일자:20020225	LG카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남동구 만수1동 971-11번지
							을부번호:4813-200 2-004111 설정일자:20020430	박*목	경남 진주시 주악동 156-4	
4	96도4136	봉고프런티 어	화물 중형	한국산 업안전 검사(주)	1201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번지 *호 **블럭 **롯데	을부번호:2817-201 0-001335 설정일자:20100225	하나캐피탈 (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번지 3호 나라빌딩7층	남동구 소래LH4단지 지하주차장
5	27조1315	CIVIC 1.8	승용 중형	김*호	84.12.2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 ***호(신안동)	을부번호:2906-200 8-003771 설정일자:20080414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	남동공단 105BL-3LT 앞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495호

남동구 강제전인 장기미반환 차량 공매공고(5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16.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다 음 -----

1. 공매공고일정

-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16년 10월 18일 ~ 10월 23일 24:00까지(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6년 10월 23일 24:00 까지
-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6년 10월 24일 14:00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홈페이지(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서 발표

2. 매각대상 차량 : 차량 6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공매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100이상의 공매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유찰된 공매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이자 없이 3일 이내 환불 처리함)

☞ 입금계좌번호 : 신한 100-023-716710 예금주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다.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마. LPG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 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 시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1인에 1대만 등록 가능한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LPG차량은 처분해야만 등록 가능.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자동차 인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매각 예정가 :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 지난 회차 유찰 차량으로 당초 매각가격의 10% 감액된 금액)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입찰권한이 있는(입금완료) 자로서 1인 입찰(단독입찰)시에도 낙찰됨.

7. 매수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 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대금(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열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전에 차량보관소를 방문하고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견인차량보관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 (☎ 032-453-2903~4)
- 마. 낙찰되고 계약체결 후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인수해간 차량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 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 매각차량 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 차량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변속기	배기량	모델연도	연료	색상	입찰최저가
1	13우4440	레간자	수동	1998	1997	휘발유	은색	300,000
2	25조9647	SM520	자동	1998	1998	휘발유	흰색	420,000
3	69노9332	카렌스베 타2.0	자동	1975	2000	LPG	은색	300,000
4	73노3157	스타렉스 장축12인 승	수동	2607	1998	LPG	노랑색	600,000
5	800어6563	카니발6 밴	수동	2902	2001	LPG	흰색	420,000
6	41구9812	로체	자동	1998	2007	LPG	흰색	350,0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502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외 1개소

구분	위치	규모	대지
본관	인주대로 898 (만수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73㎡/748평)	1,482㎡(448평)
별관	담방서로23번길 17(만수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85㎡/395평)	525.6㎡(159평)

2. 위탁 사무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 직업재활시설(열린일터) 운영
- 주간보호시설(늘푸른동산) 운영
- 해맑음땀방울농장 운영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 장애인수중재활치료사업 운영
- 장애인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전담어린이집(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운영 등

3. 위탁 기간 : 2017. 1. 1. ~ 2021. 12. 31. (5년)

4.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6. 10. 20. ~ 10. 26.(7일간)

○ 접수기간 : 2016. 10. 27. ~ 11. 2. (09:00~18:00)

○ 신청서식 :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http://www.namdong.go.kr/>)

○ 접수처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외에 법인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인

6. 수탁자 결정 및 통지

○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선정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 현황(소정양식) 및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대표 이력서

○ 법인자산 현황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

○ 최근3년(2013년~2015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 2017년~2021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서(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 기타 수탁운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3부 제출

· 수탁자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본 13부 제출

· A4용지 규격으로 상철로 작성하고 슬라이드, VTR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위탁 조건

-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기타 지침 사항 준수
 - 장애인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단체사무실 및 운영법인 사무실, 외부임대, 종교 집회장 및 숙소 등)
 -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 기타 남동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준수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탁협약서에 의함
9. 심의 항목 : 수탁자적격성, 재정능력, 운영능력 등
10. 심의 절차

구분	소요시간	내용
제안 설명	10분	법인대표 등 3인까지 입실 가능
질의응답	10분	위원 질의응답 종료 후 법인 관계자 퇴장
심의 의결	-	총점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선정

11.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의 법인 중 고득점자 선정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점수를 얻은 기관에 한해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12. 협약체결

- 일자: 2016년 11월 중
- 장소: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13. 유의 사항

- 신청서 서류 제출 전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제출
 - 수탁법인 선정심사의 일부항목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므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의 당일(추후통보)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 제출서류 작성 시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 예산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남동구 및 타지역에서 비리 및 부실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 불가
 -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심의사항은 비공개
-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 문의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T.032-453-2522)

[신청안내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신청 안내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10. 20. ~ 10. 26.
- 접수기간 : 2016. 10. 27. ~ 11. 2. (09:00~18:00)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선정심사일정 : 추후 안내

□ 위탁운영법인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선정 심의기준 결정
-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 심사 자료를 심의위원이 직접 검토
- 심의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 ※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점수를 얻은 기관에 한해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신청 법인이 1개 법인인 경우 위탁조건의 실현가능성 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여부 결정

□ 신청법인 사업계획 의견 설명 및 위원 질문(접수 순)

- 발표자 : 1명(단, 법인대표 및 시설장예정자 등 3인 이내 참석 가능)
- 발표내용 : 신청 자료 설명 및 복지관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 발표 및 질의시간 : 20분 이내(법인발표 10분, 위원질의 응답 10분)

□ 참고사항

- 신청서류 접수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
음.(접수 즉시 봉인, 서류접수일 경과 후 특정일에 신청법인 임회하에 봉인해제)

[신청서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소재지	주사무소	
			부사무소	
법인 설립일자		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법인의 주요사업 (간략하게)				
수탁신청 동기				
법인전입금 확보방안				
법인의 자산현황	총계	억원, 부동산	억원, 동산	억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 현황(소정양식) 및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대표 이력서
- 법인자산 현황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
- 최근3년(2013년~2015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 2017년~2021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서(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 기타 수탁운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3부 제출
- 수탁자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본 13부 제출
- A4용지 규격으로 상철로 작성하고 슬라이드, VTR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법 인 현 황

1. 일반현황

- (1) 수탁신청의 목적 및 배경 :
- (2) 법인명 :
- (3) 소재지(주소) :
- (4)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 (5)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학과명)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6)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취임일자	연 락 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첨부서류 : 임원 전원의 이력서

- (7) 설립일자 및 연혁(*별지 작성 가능)

일자	내용

(8)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
-
-

(9)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조 직 도

계					

○ 직원현황

성 명	생년월일	부서명	담당업무	비 고

※ 기준 일자: 2014. 1. 1. ~ 2016. 9. 30.

※ 직원급여대장 및 건강보험납입사실증명서 첨부

2. 법인의 운영실적

(1) 신청법인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일자	내 용	시행기관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 기준 일자: 2014. 1. 1. ~ 2016. 9. 30.

※ 법인 기관수상 실적(원본대조필 날인 자료에 한함)

(2)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 최근 5년 자료

점검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 기준 일자: 2011.01.01. ~ 2016.09.30

(3) 기타사항

- ○
○

3.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운영실적

(단위 : 명, 천원)

연 번	시설명	연도	소재지	사업내용	종사자수	개설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기관코드	사업비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	자부담 (이용료 등)

※ 소재지순으로 연도별(2013년~2015년)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

(2) 우수사항(수상 경력 등)

년 월 일	내 용	시행기관	증빙자료페이지	비 고

※ 기준 일자: 2014. 1. 1. ~ 2016. 9. 30.

※ 소재지(기관)순으로 작성

(3) 사회복지사업 언론 보도사항

년 월 일	보도언론	보도내용	증빙자료페이지	비 고

※ 기준 일자: 2014. 1. 1. ~ 2016. 9. 30.

※ 소재지(기관)순으로 작성

증빙자료 : 신문스크랩, 방송사 확인사항 등 검증이 가능한 자료

(4) 기타사항

○

4. 재정능력(2016. 9. 30. 기준)

(1) 법인재산 현황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C)	순 자 산			부 채 (C)	비 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2) 재산의 성질별 현황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동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총가액 (천원)	증빙자 페이지	비 고 (용도)
계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 동산

동산 형태	금액(천원)	증빙자료페이지	비 고
계			

※ 증빙자료 첨부

- 부채

.

.

※ 증빙자료 첨부

○ 수익용 기본재산

- 부동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총가액 (천원)	증빙자 페이지	비 고 (용도)
계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 동산

동산 형태	금액(천원)	증빙자료페이지	비 고
계			

※ 증빙자료 첨부

- 부채

.

.

※ 증빙자료 첨부

○ 기타재산

- 부동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총가액 (천원)	증빙자 페이지	비 고 (용도)
계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 동산

동산 형태	금액(천원)	증빙자료페이지	비 고
계			

※ 증빙자료 첨부

- 부채

.
.

※ 증빙자료 첨부

(3) 최근 3년간(2013년~2015년)법인 연간수입액 : 천원

수입 내역	금액(천원)	비고
계		
수 익 사 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 산 사 업		임대료 등
회 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성과 후원금		종교단체 등
해외 보조금		사회단체사업 등
기 타		

(4)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결산서

○
○
○

※ 관련서류 별첨

(5) 법인의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법인명	법인 지원액	부담방법	비 고
		현금예치 (위탁법인 선정시)	

※ 경비부담 승낙서 첨부

사업 운영 계획서

(2017년 ~ 2021년)

1. 사업명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1)

(2)

(3)

3.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1) 시설장 채용 방식(○, × 기입)

- 사회복지사업안내지침 종사자 공개모집에 의거한 공개채용여부 (○, ×)

(→ 공개채용하는 경우 (2)번 항목 작성)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 ×)

(→ 법인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3)번 항목 작성)

(2) 시설장 채용 조건

○ 학력

○ 경력

○ 자격증

○

(3) 시설장예정자 인적사항 및 경력 현황

○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학과명)

○ 자격 취득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 근무 경력

시설종류	근무 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계		00년 00개월		
장애인복지 시설	소 계				
사회복지관	소 계				
노인복지 시설	소 계				
아동복지 시설	소 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소 계				
기타 복지시설	소 계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4)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5)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

(6) 종사자 확보계획

직	종	별	인	원	수	비	고
계			0				
관		장					
사	무	국	장				
사	회	복	지	사			
특	수	교	사				
물	리	치	료	사			
작	업	치	료	사			
언	어	치	료	사			
직	업	재	활	사			
직	업	훈	련	교	사		
행	정	사	무	직			
기		능	직				
고		용	직				
기			타				

※ 누락된 직종 추가,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4. 기관 각종 운영규정

(1)

(2)

※ 운영규정 별첨

5.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

※ 구체적으로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요약서 별도작성(A4용지 2매 분량)

6.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3) 재정운영계획

○

(4) 재정투자계획

○

(5) 재정책총방안

○

7. 자부담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자부담 금액					자부담 비율 (%)	자부담액 확보 방법	비 고
	계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잡수입			
							※자부담액 예산과목별 작성	

8. 세입세출예산서 : 별도작성(사회복지사업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목별 세입 · 세출예산 편성금액 산출사유(근거) 및 부기내역기재

9.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연계 방안

(3)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활용 방안

법 인 부 담 금 납 입 확 약 서

_____은(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천원)

년도 별	부담액	부담 방법	비고
합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첨부 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1부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각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상기 본 법인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 제출한 서류 및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 선정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 심의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남동구청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와 관련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3%)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금액 조정(안 제3조제2항, 별표2)

- 2016년도 : 2,039,000원 → 2017년도 : 2,100,000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20일

발 의 자 : 최승원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 -1(2014.10.27.)]와 관련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3%)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금액 조정(안 제3조제2항, 별표2)

- 2016년도 : 2,039,000원 → 2017년도 : 2,100,000원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
-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현황

남동구 조례 201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2,1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2,039,000원	지급액(1인기준)	2,100,000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2014.10.27.)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작성자 : 남동구의회 최승원 의원 (인)

[참고자료1]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3.]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⑨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⑩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참고자료2]

*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區)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구 분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 비
결정금액	연 : 36,780천원 (월 3,065천원)	연 : 13,200천원 (월 1,100천원)	연 : 23,580천원 (월 1,965천원)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제1항제2호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지급범위 내

※ 2016년 ~ 201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내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주무관 최훈

법무팀장/담당 노용희

위원장 박재만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 - 1 (2014.10.27) 접수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남동구가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하루/기획예산실/2014/10/27 16:31:51

인천광역시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014년 10월 6일

구 분		결정금액	비 고
결정금액 (여비제외)		36,780천원	
지 급 장 정 결 정 항 목	월정수당	연 : 23,580천원 (월 : 1,965천원)	○ 공무원보수인상율 범위내 결정
	의 활 등 비	연 : 13,200천원 (월 : 1,100천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금액
	여 비	- 아래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국내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區)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6)>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구	의 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참고자료3]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현황

(단위 : 원)

군·구	의정활동비 (월/1인기준)	월정수당(월/ 1인기준)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인천시	1,500,000	3,459,000	3,459,000 (동결)	- 2015년부터 동결	
중 구	1,100,000	1,899,000	1,960,000 (3% 인상)	- 동결	
동 구	1,100,000	1,747,290	1,800,000 (3% 인상)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	
남 구	1,100,000	1,982,580	2,040,000 (3% 인상)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반영	
연수구	1,100,000	1,928,000	1,990,000 (3% 인상)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	
남동구	1,100,000	2,039,000	2,100,000 (3% 인상)	- 공무원 보수 인상을 범위 내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3%)
부평구	1,100,000	1,927,500	1,980,000 (3% 인상)	- 동결	
계양구	1,100,000	1,778,900	1,830,000 (3% 인상)	- 동결	
서 구	1,100,000	1,949,500	2,010,000 (3% 인상)	- 동결	
강화군	1,100,000	1,634,820	1,680,000 (3% 인상)	- 동결	
옹진군	1,100,000	1,514,852	1,560,000 (3% 인상)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	

※ 2017년 월정수당 :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3% 일괄 반영(인천시의회 동결)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남동구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청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 및 보호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인권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근로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1, 5033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9
----------	------

발의연월일 : 2016. 10.20.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 외 5명

☐ 제 안 이 유

-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남동구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구청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 및 보호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인권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근로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우리 구에 소재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청소년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근로에 관한 권리) ① 근로하는 아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2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3조(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간계획 수립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해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신 동 섭 의원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20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1) 면적 오기 정정
 - 가) 단독·다세대 용도의 가구 및 획지 조서(B-3용도) : 변경

기정					변경					확정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3	15	5,803.2	6	419.2	B-3	15	5,803.2	6	410.2	560-8
			7	720.8				7	720.8	560-9
			8	363.2				8	363.2	560-10
			9	181.7				9	181.7	560-11
			10	172.9				10	172.9	10,11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560-12
			11	171.7				11	171.7	9,11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560-13
			12	291.2				12	291.2	9,10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560-14
			13	375.3				13	375.3	560-15
			14	290.5				14	290.5	560-16
			16	2,816.7				16	2,825.7	560-7

※ 6, 16번 획지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2) 획지변경

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가구 및 획지조서(B용도) :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	12	4,757.1	1	402.2	557-1	B	12	4,757.1	1	402.2	557-1
			2	575.5	557-2				2	575.5	557-2
			3	389.8	557-3				3	389.8	557-3
			4	424.2	557-4				4	424.2	557-4
			5	418.8	557-5				5	418.8	557-5
			6	240.0	557-6				6	240.0	557-6
			7	545.2	557-7				7-1	277.7	557-7
			8	367.6	557-8				7-2	267.5	557-15
			9	235.0	557-9				8	367.6	557-8
			11	452.7	557-11				9	235.0	557-9
			12-1	274.0	557-13				11	452.7	557-11
			12-2	345.9	557-14				12-1	274.0	557-13
			13	86.2	557-12				12-2	345.9	557-14
									13	86.2	557-12
B	53	2,594.8	2	615.4	576-2	B	53	2,594.8	2	615.4	576-2
			3	281.8	576-3				3	281.8	576-3
			4	246.7	576-4				4	246.7	576-4
			5-1	246.7	576-8				5-1	246.7	576-8
			5-2	246.7	576-5				5-2	246.7	576-5
			6	609.5	576-6				6-1	304.7	576-6
									6-2	304.8	576-9
			7	348.0	576-7				7	348.0	576-7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	55	3,997.3	1	378.5	578-1	B	55	3,997.3	1	378.5	578-1
			2	419.4	578-2				2	419.4	578-2
			3	349.8	578-3				3	349.8	578-3
			4-1	204.4	578-4				4-1	204.4	578-4
			4-2	275.3	578-12				4-2	275.3	578-12
			5	337.2	578-5				5	337.2	578-5
			6	401.5	578-6				6	401.5	578-6
			7	516.5	578-7				7-1	258.3	578-7
									7-2	258.2	578-14
			8-1	214.6	578-11				8-1	214.6	578-11
			8-2	214.6	578-8				8-2	214.6	578-8
			9	217.3	578-9				9	217.3	578-9
			10-1	203.7	578-10				10-1	203.7	578-10
			10-2	264.5	578-13				10-2	264.5	578-13
B	58	4,391.0	1	381.4	581-1	B	58	4,391.0	1	203.5	581-1
			2	526.6	581-2				2	526.6	581-2
			3	427.3	581-3				3	427.3	581-3
			4	345.7	581-4				4	345.7	581-4
			5	345.8	581-5				5	345.8	581-5
			6	306.1	581-6				6	306.1	581-6
			7	383.2	581-7				7	383.2	581-7
			8	957.0	581-8				8-1	375.0	581-8
									8-2	370.0	581-13
			10	169.0	581-10				8-3	381.0	581-14
									11	363.4	581-16
			11	165.3	581-11				12	363.4	581-15
			12	383.6	581-12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조서 상 현황일치를 위한 변경

나) 단독·다세대 용도의 가구 및 획지 조서(B-3용도) :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3	15	5,803.2	6	410.2	560-8	B-3	15	5,803.2	6	410.2	560-8
			7	720.8	560-9				7	720.8	560-9
			8	363.2	560-10				8	363.2	560-10
			9	181.7	560-11				9	181.7	560-11
			10	172.9	560-12				10	172.9	560-12
			11	171.7	560-13				11	171.7	560-13
			12	291.2	560-14				12	291.2	560-14
			13	375.3	560-15				13	375.3	560-15
			14	290.5	560-16				14	290.5	560-16
									16	760.7	560-7
									17	761.0	560-17
									18	874.4	560-18
									19	429.6	560-19, 560-21
			16	2,825.7	560-7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조서 상 현황일치를 위한 변경

다) 단독·근린생활시설복합용도의 가구 및 획지조서(A용도) :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3	6,685.4	1	683.0	548-1	A	3	6,685.4	1	683.0	548-1
			2	205.7	548-2				2	205.7	548-2
			3	387.0	548-3				3	387.0	548-3
			4	380.9	548-4				4	380.9	548-4
			5	382.8	548-5				5	382.8	548-5
			6	304.6	548-6				6	304.6	548-6
			7	296.7	548-7				7	296.7	548-7
			8	662.7	548-8				8	662.7	548-8
			9	404.8	548-9				9	404.8	548-9
			10	703.3	548-10				10	703.3	548-10
			11	635.9	548-11				11	635.9	548-11
			12	550.7	548-12				12	567.9	548-12
			13	585.2	548-13				13	568.0	548-15
			14	502.1	548-14				14	502.1	548-14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조서 상 현황일치를 위한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	4	4,794.9	1	497.5	549-1	A	4	4,794.9	1	497.5	549-1
			2	645.6	549-2				2	645.6	549-2
			3	1,128.6	549-3				3-1	618.0	549-3
			4-1	580.4	549-8				3-2	510.6	549-10
			5	445.8	549-7				4-1	580.4	549-8
			6	337.1	549-6				5	445.8	549-7
			7	648.2	549-5				6	337.1	549-6
			8	511.7	549-4				7	648.2	549-5
									8	511.7	549-4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조서 상 현황일치를 위한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Ⅲ.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21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공영개발단(☎453-5682)에 비치하고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8-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 사업규모
 - A=9,929m²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영개발사업단)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8.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용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남동	수산	2-9	전	1,157	1,025	신○○	남동구 수산동 ○○				
2	인천	남동	수산	2-27	전	4,784	2,587	김○○	남구 도화동 ○○				
3	인천	남동	수산	2-66	도	128	19	인천광역시					
4	인천	남동	수산	4-4	전	1,653	1,653	서○○	남동구 만월북로 ○○	국민은행 (간석동)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	
5	인천	남동	수산	8-1	전	3,158	3,158	신○○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길 ○○				
6	인천	남동	수산	8-6	도	11	11	배○○외7 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				
7	인천	남동	수산	9-1	전	721	721	신○○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길 ○○				
8	인천	남동	수산	9-6	도	9	9	이○○	동구 만석동 ○○				
9	인천	남동	수산	10-5	전	489	489	신○○	인주대로 820번길 ○○				
10	인천	남동	수산	10-12	전	1	1	신○○	남동구 수산동 ○○				
11	인천	남동	수산	10-14	도	23	23	이○○외2 인	동구 안송로 39번길 ○○				
12	인천	남동	수산	596-3	도	233	233	국(건설부)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동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인천	남동	수산	10-5	전	비닐하우스	PP	2 동	수산동 ○○	신○○				농업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45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23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 동	70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 로	45	2012.3.28	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 남로4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5를건 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 동	58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25번 길	14-8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은봉 로225번길14-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8을 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1-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 로112 번길	60	2009.11.16	만월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만월 북로112번길6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0을건 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동	96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70번길	33	2009.11.16	하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하촌 로70번길3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3을건 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 동	65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 로653 번길	15	2009.11.16	앵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앵고 개로653번길1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을건 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 동	629-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 로	395	2009.7.6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던 함박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의 함박산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함박 외로39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5을 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60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7	2009.7.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석정 로54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47을 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 동	736-1 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 산로15 8번길	15-1 1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6.10.21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 방산로158번길15-1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11 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 동	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 로	23	2016.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 동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 로	27	2016.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1-11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 로112 번길	60	2016.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601-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7	2016.10.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